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8. 3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1년 8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1년 8월 31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이 영 복

가. 개정이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 6. 7일자로 약사법이 (법률 제10788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1. 5. 6일자로 「약사법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5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관리업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의약품 판매업소 허가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1) 안 별표에서 11.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인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상위법인 「약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근거 법령 조문 정비

(2) 안 별표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별표5에 따라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관한 사무에서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등 2개 항목을 신설

(3) 안 별표에서 약사법 제45조제1항, 제5항, 제69조~제71조, 제74조, 제76-제77조, 제81조,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에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등 11개 항목을 신설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관리업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구 사무위임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9
----------	-------

제출년월일 : 2011.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 사유

- 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보건소장에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사무 (신설)
-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별표5에 따른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
- 나.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사무(신설)
- 「약사법」 제45조제1항 등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
-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
-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으로 관련 법령 조문 정비

3. 관련 근거

- 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별표5
- 나. 「약사법」 제45조제1항, 제45조제5항, 제69조~71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98조
- 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00조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나.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11. 7. 14~ 8. 3(제출된 의견 없음)
- 마. 붙임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보건소란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호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 건 소	11.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나. 약국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라.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등의 변경 명령 차.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그에 따른 청문 카. 약사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 범위 타.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2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7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0조 ○ 같은 법 제23조제2항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제100조 ○ 「약사법」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보건소장

주관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건소	<p>15.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 업소 지정</p> <p>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 업소 사후관리</p> <p>16.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허가</p> <p>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p> <p>다. 보고와 검사 등</p> <p>라. 업무개시 명령 등</p> <p>마. 폐기명령 등</p> <p>바. 개수명령</p> <p>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p> <p>아. 허가증 등의 갱신</p> <p>자. 허가증 등의 재교부</p> <p>차. 과징금부과 및 징수</p> <p>카. 과태료부과 및 징수</p>	<p><신설></p> <p>○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별표5</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별표5</p> <p><신설></p> <p>○ 「약사법」 제45조제1항</p> <p>○ 같은 법 제45조제5항</p> <p>○ 같은 법 제69조</p> <p>○ 같은 법 제70조</p> <p>○ 같은 법 제71조</p> <p>○ 같은 법 제74조</p> <p>○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p> <p>○ 같은 법 제80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p> <p>○ 같은 법 제81조</p> <p>○ 같은 법 제98조</p>	보건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보건소	11. (생략)		보건소장	보건소	11.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보건소장
	가.(생략)	○ 약사법 제16조 ○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 「약사법」 제2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7조	
	나.(생략)	○ 동법 제20조 ○ 동법시행규칙 제84조			나. 약국 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다.(생략)	○ 동법 제33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9조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0조	
	라.(생략)	○ 동법 제41조			라.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마.(생략)	○ 동법 제64조			마.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바.(생략)	○ 동법 제64조의2			바. 업무개시 명령등	○ 같은 법 제70조	
	사.(생략)	○ 동법 제65조			사.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아.(생략)	○ 동법 제67조			아.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자.(생략)	○ 동법 제68조			자. 관리자등의 변경 명령	○ 같은 법 제75조	
	차.(생략)	○ 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89조			차. 등록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등, 그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카.(생략)	○ 동법 제70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카. 약사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타.(생략)	○ 동법 제71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93조			타.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제100조	
	파.(생략)	○ 약사법 제71조의3 ○ 동법시행령 제30조 ○ 동법시행규칙 제91조			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약사법」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소	하.(생략) <신설>	○ 동법 제79조 ○ 동법시행령 제31조 ○ 동법시행규칙 제91조	보건 소장	보건소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 제기 처리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보건 소장
				15. <u>의약품유통관리 기준에 관한 다음 사무</u> 가. <u>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지정</u> 나. <u>의약품유통관리 기준적격업소 사후관리</u> 16. <u>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u>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허가</u> 나. <u>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u> 다. <u>보고와 검사 등</u> 라. <u>업무개시 명령 등</u> 마. <u>폐기명령 등</u> 바. <u>개수명령</u> 사. <u>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u> 아. <u>허가증 등의 갱신</u> 자. <u>허가증 등의 재교부</u> 차. <u>과징금부과 및 징수</u> 카. <u>과태료부과 및 징수</u>	○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별표5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별표5 ○ 「약사법」 제45조제1항 ○ 같은 법 제45조 제5항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